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05
------------	------

제출연월일: 2024. 7. 1.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23. 4. 27.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안 제1조~제2조)
- 나. 예산 지원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 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 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19755호, 2024. 5. 16.)
- 라. 입법예고: 2024. 5. 13. ~ 6. 3.(21일간) / 의견 없음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예산 지원)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 · 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 · 감독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등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경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근 거 법 규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 · 도경찰청장 · 경찰서장 · 지구대장 · 파출소장(이하 “시 · 도경찰 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장 · 면장 ·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장 · 면장 · 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회 · 연합회 · 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시 · 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 · 군 · 구에 시 · 군 · 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 · 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관련 예산은 개정 전 조례에 의하여 본예산에 편성되었음

3. 작성자

- 소 속: 자치행정과
- 직 급: 지방행정서기
- 성 명: 백지은
- 연락처: (052)290-3254